

## 겸임교원 및 파견교원 규정

1998. 3. 6. 제정

2014. 1. 29. 개정

- 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「교원인사 규정」 제26조 제3항에 따라 교원의 겸임과 파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4.1.29.)
- 제 2 조 (겸임교원·파견교원의 정의) ①이 규정에서 겸임교원이라 함은 본교 대학(원)(특수대학원 포함)의 하나의 학과(부) 또는 교무처(이하 “본래의 소속기관”이라 한다)에 소속된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소속기관 이외의 교내기관(이하 “겸임기관”이라 한다)의 교원을 겸하는 자를 말한다. (개정 2014.1.29.)
- ②이 규정에서 파견교원이라 함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소속기관 이외의 다른 교내기관(이하 “파견된 기관”이라 한다)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. (개정 2014.1.29.)
- 제 3 조 (적용규정) ①겸임교원에 관하여는 본래의 소속기관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- ②파견교원에 관하여는 파견된 기관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- 제 4 조 (신분변동시의 통지) 겸임교원 또는 파견교원의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은 즉시 그 사실을 본래의 소속기관과 겸임기관 또는 파견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 5 조 (겸임교원의 강의와 학생지도) ①겸임교원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속기관과 겸임기관에서 각각 한 강좌 이상을 강의하여야 한다.
- ②겸임교원은 본래의 소속기관의 학생을 지도(논문지도 포함)한다. 다만, 겸임기관의 장은 본래의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겸임교원으로 하여금 겸임기관의 학생을 지도(논문지도 포함)하게 할 수 있다.
- 제 6 조 (교수회 참여) ①겸임교원은 본래의 소속기관과 겸임기관의 교수회의 구성원이 된다.
- ②파견교원은 파견된 기관의 교수회의 구성원이 된다.
- 제 7 조 (파견교원의 파견기간) ①파견교원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1학기를 단위로 하여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②파견교원이 파견된 기관의 장으로 보해지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- 제 8 조 (파견교원의 복귀) 파견교원은 파견기간이 만료하면 본래의 소속기관에 복귀한다.
- 제 9 조 (파견교원에 대한 지휘·감독) 파견교원은 교무행정에 관하여는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- 제 10 조 (교외 파견교원에 대한 특례) 본교 이외의 기관에 파견된 교원에 대하여는

교내 파견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(1998. 3. 6. 제정)

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1. 29. 개정)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